

2024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(게시용)

국재대학교 교학처(교학2팀) 2023.4.

1 선발(추진) 일정

1. 선발(추진)일정 ※ 일정은 추천 현황,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구분	[대학/학생]	[대학]	[대학/학생]	[재단]
내용	[대학] 선발공고 안내 [학생]신청서, 구비서류 제출(제출처 : 교학2팀)	장학생 선발 및 심사* (자체 선발기준)	①[대학] 선발된 장학생 추천 등록 ②[학생] 추천대상자 학생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통보일자: ~24.4.22.(월) ※신청 대상 :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신규장학생으로 추천되어 통보받은 자 ③[대학] 대학 최종 추천 24.4.24.(수)까지	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
일정	[학생] 신청서제출 : 24.4.19.(금) 11시 마감	4.19.(금) (예정)	[학생] 피추천자 본인 장학금 신청, [대학] 장학생 추천 : 24.4.24.(수)까지	[발표] 24.4월말 (예정)

2 선발(추천)기준

1. 지원자격 :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으로(신입생 포함), 다음의 신청자격 기준에 충족되는 자
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과학기자 신청불가 ② '24-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③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장애인가정,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, 자립준비청년(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·보호연장아동 포함),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자, 다문화가정, 주거비 지원 필요자,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 '24-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 필수사항 :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(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)

2. 지원내용 : 학기당 150만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, 정액지원)

구분	학년*	배정 인원	장학금액	지원기간	지원방식
2024년 신·편입생군	1학년	1명	학기당 1,500,000원	2개 학기 (‘24-1, 2학기)	생활비 무상보조
재학생	2~4학년	2명			

3. 선발(추천)기준 : ‘24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내 중 낮은 순으로 선발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선발(추천)

구분	내용(배점)				
소득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‘24-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(단, 계속장학생(‘24-2)의 경우 소득구간 기준 없음) 소득구간별 배점기준 				
	소득구간(분위)	0구간	1구간	2구간	3구간
	배점	100	95	90	85
성적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계속장학생(‘24-2학기)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‘24-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(C학점 평균) 이상 성적기준 적용 ※ 계속장학 중 주거비 지원 선발자는 2학기 자격요건 확인 필요 				
우선순위 및 동점자 처리기준	·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순위				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
	소득구간(분위) 점수 상위자	학생 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	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(본인 또는 자녀)	자립준비청년 ¹⁾	장애인 가정
	6순위	7순위	8순위	9순위	10순위
	새터민 가정 (탈북주민)	다문화가정	한부모가정 ²⁾	주거비지원 필요자	성적우수자 ³⁾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방침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심사함 ① 심사 순서: 소득분위 낮은 순 →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순위 → (동점자 발생시) 성적이 우수한 학생 우선선발 → 생활비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※ 신청유형을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반영하여 심사 ② 소득, 유형별 우선순위가 동점인 경우,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심사 					

	(1순위) 성적이 우수한 학생 우선선발 : 재학생(직전학기성적), 신·편입생(입학성적 총점) (2순위) '24-1학기 생활비 형식의 장학금(무상보조)를 받지 않은 학생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4. 장학생 세부자격 및 제출서류 : **붙임#1 참조**

5. 장학생 탈락기준

- *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
- *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

구분	내용(배점)
신청내용	·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-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계속 장학생	·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미 충족될 경우 '24년 2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· 계속 장학생 심사기준 : 직전 정규학기('24년 1학기)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※ 신규장학생 신청 당시 자격요건 유지 중인 것으로 간주(단, 주거비 지원 선발자는 자격요건 확인 필요)
학적변동	·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, 자퇴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※이연불가 -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· 장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

6. 유의사항 : **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**

7. 장학생 추가 선발: 2024년 2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및 장학금 지급 이후 장학금 집행 잔여 예산⁴⁾에 대한 신규장학생 추가선발 및 지원 가능(2학기 신규장학생(추가선발)은 1개 학기 일시지원)

1) 자립준비청년: 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·보호연장아동 포함
 2) 한부모가정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
 3) 성적우수자: 신·편입생군(입학성적(총점) 상위자), 재학생(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점수 상위자)
 4) 발생사유: 대학의 장학생 미선발,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, 성적미달 및 자격 미달로 인한 계속장학생 탈락 등

붙임 2

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 자격 및 제출서류(상세)

구 분	자 격	제출서류
1. 장애인 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'중증' 장애인 또는 그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 증명서('중증' 표기) 또는 장애인등록증(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기재된 서류)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2. 새터민 가정 (탈북주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인 경우)
3. 자립준비청년 ⁵⁾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(붙임3)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
4.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	<p>【학생가장 본인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자격)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(자격확인) 가족관계증명서 (제한) 기혼자 지원 제외 <p>【조손가정 자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/모가 사회적 배려계층*에 해당되어야 함 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조손가정의 경우), 사실관계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 ※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
5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* 본인 또는 그 자녀 *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,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
6. 한부모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* * 만 22세 미만(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 증명서
7. 다문화 가정	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(개명 등)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8. 주거비 지원 필요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자격) 대학 소재지 외 국내 he지역 출신 학생 (자격확인) 기숙사 고지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(제한)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(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) 지원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(월세)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초/등본 기숙사, 고시원등: 입실확인서(붙임2),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※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: (미혼 본인 또는 부모(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※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: 대학생(신청자 본인) ※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*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

5) 자립준비청년(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)은 보호종료 확인서, 조기종료아동(퇴소확인서), 보호연장아동(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, 가정위탁보호 확인서)